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법적 근거 마련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4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법적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8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법적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1. ~ 8. (생 략) <u><신 설></u>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 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 공자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 관한 사항</u> 10. -----제9호까지의----- ----- ----- - 11. -----제10호까지의----- ----- -----

(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 (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 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 성에 관한 사항	----- ----- ----- ----- -----
11. (생략) ② ~ ④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재 고용노동부는 매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고용증가량이 높고 일자리 질 개선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10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으뜸기업 선정을 홍보하고 채용을 지원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조달가점부여, 관세·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함.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

구 분	내 용
금 용	신용평가 우대, 증권대행 및 전자위임장수수료 등 7개 수수료 면제, 여신지원 금리우대 등
세무조사	관세조사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정책자금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우선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등
출입국고용허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사증·체류우대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2025.2.19.

한편,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종사자,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2009년 동 포상을 시행한 이래 매년 포상을 실시한바 2025년까지 총 2,427점의 포상을 수여한 바 있음.

<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연도별 포상규모 >

연도	총계	정부포상					장관 표창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25	120	82	5	7	34	36	38
2024	120	82	5	7	34	36	38
2023	119	81	5	7	34	35	38
2022	143	84	5	7	35	37	59
2021	176	86	6	7	36	37	90
2020	171	86	6	7	36	37	85
2019	174	88	6	8	37	37	86

자료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2025.2.

그러나 이 두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약 15년간 추진되어

온바,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시책으로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을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포상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정책의 체계성과 제도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는바,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

문 의 처
02)6788-5535

1) 고용노동부는 같은 이유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